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8 선고 2021가합509869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4. 10. 11 선고 2023나202433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8 선고 2021가합509869 판결

전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현 담당변호사 황희

변 론 종 결 2023. 3. 2.

판 결 선 고 2023. 5.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1. B과 피고 사이에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돈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519,239,93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산하 서울지방국세청은 2020. 4. 6.부터 2020. 4. 25.까지 한의사인 B에 대해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B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C를 운영하면서 2012년 ~ 2018년 귀속 수입금액 5,273,164,144원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원고 산하 삼성세무서장은 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B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144,756,190원을 결정하고 이를 2020. 5.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며, 2013년 ~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 2,347,479,170원을 결정하고 이를 2020. 6. 15.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나. B은 삼성세무서장으로부터 납부고지 받은 종합소득세에 대해 2020. 11. 18. 59,800,000원, 2020. 11. 26. 100,000,000원을 납부하였을 뿐 나머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 사건 소제기 당시 B이 체납한 종합소득세 및 가산금의 합계는 아래 표와 같이 2,519,239,930원에 이른다.

순번	세목	관할관서	귀속연도	납세의무 성립일	고지세액(원)	가산금 포함 체납액(원)
1	종합소득세	삼성	2012	2012. 12. 31.	144,756,202	156,698,560
2	종합소득세	삼성	2013	2013. 12. 31.	237,215,942	255,007,060
3	종합소득세	삼성	2014	2014. 12. 31.	374,303,905	402,376,630
4	종합소득세	삼성	2015	2015. 12. 31.	407,646,725	438,220,210
5	종합소득세	삼성	2016	2016. 12. 31.	456,801,771	410,663,380
6	종합소득세	삼성	2017	2017. 12. 31.	419,207,934	450,648,460
7	종합소득세	삼성	2018	2018. 12. 31.	452,302,940	405,625,630
합계					2,492,235,419	2,519,239,930

다. B은 2004. 9. 24. 피고와 혼인신고를 하여 현재까지 서로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다.

라. B은 B(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2016. 3. 10.부터 2020. 2. 12.까지 150회에 걸쳐 별지1 목록 기재 금액 합계 2,593,212,120원을, B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2016. 3. 7.부터 2020. 3. 6.까지 55회에 걸쳐 별지2 목록 기재 금액 합계 621,215,200원 등 합계 3,214,427,320원(= 2,593,212,120원 + 621,215,200원)을 피고에게 각 계좌이체(이하 이를 ‘이 사건 각 계좌이체 행위’라고 하고, 개별 계좌이체 행위는 별지1, 2 순번으로 특정한다)하였다.

마. B은 2016. 3. 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라.항 기재 D은행 계좌들에 보관되어 있던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 이외의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그 예금채권 잔액은 이 사건 계좌이체 행위가 이루어진 2016. 3. 7.부터 2020. 3. 6.까지 100,000,000원 내외에서 유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35, 37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에 대해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B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각 계좌이체 행위를 한 것은

증여에 해당하고, 이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그에 따른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따라서 B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각 계좌이체 행위는 모두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각 계좌이체 합계액 3,214,427,320원 중 B의 국세채납액 2,519,239,9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요지

원고의 B에 대한 종합소득세 채권은 원고가 B에게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것을 고지한 2020. 5. 11. 및 2020. 5. 22.에 각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원고의 위 종합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계좌이체 행위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또한 B은 이 사건 계좌이체 행위 당시 위 종합소득세 채권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고, 2012년 ~ 2014년 종합소득세 채권의 경우 이 사건 계좌이체 행위와 시간적 간격이 상당하여, 가까운 장래에 종합소득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거나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계좌이체 행위는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듯 피고가 B으로부터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일 뿐 B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B은 세법에 특별한 지식이 없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C를 운영한 것일 뿐 고의로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사해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 또한 이 사건 계좌이체 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41819 판결 등 참조).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의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성립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하는바, 원고의 B에 대한 종합소득세 채권은 각 그 연도별 말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2012년 ~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채권의 경우 그 각 과세기간이 끝난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이 사건 각 계좌이체 행위 이전에 모두 성립하였으므로 위 각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2016년 ~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채권의 경우도 비록 이 사건 각 계좌이체가 최초로 이루어진 2016. 3. 7. 이후에 순차적으로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나, 이 사건 각 계좌이체 행위가 이루어지는 동안 이미 그 과세기간이 개시되어 있는 상태로 각 조세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과세기간이 종료하여 각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또한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B에 대한 2,519,239,930원의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라 할 것이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참조), 채무자의 사해의사 역시 추정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참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므로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이때 그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등 참조). 또한 송금행위의 구체적인 법적 원인을 가리지 않고서 그 송금사실만을 가지고 송금인의 총재산의 실질적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222725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B은 2016. 3.경부터 2020. 3.경까지 약 4년 동안 자신의 D은행 계좌 잔액을 1억 원 내외로 유지하면서 총 205회에 걸쳐 피고에게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4년간 합계 3,214,427,320원이라는 거액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각 처분행위가 4년간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까닭에 그 기간이 근접하여 있지 않고 각 처분의 동기나 기회도 동일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계좌이체 행위는 각각의 송금행위별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7 내지 10, 12, 20~25, 29, 30호증, 을 제4, 7, 9,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추론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계좌이체 행위에 관하여 증여사실에 관한 증명, 즉 B과 피고 사이에 위 각 송금액을 피고에게 중국적으로 귀속하도록 B이 이를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먼저 별지1 순번 2~3, 9, 12, 16, 20, 24, 26, 30~31, 35, 41, 45, 49, 52, 58, 60, 62, 64, 68, 70, 72, 74, 79, 81, 85, 87, 90, 92, 96, 99, 102, 105, 108, 111, 115, 118, 121, 124, 128, 131, 135, 137, 140~141, 144, 147, 149번, 별지2 순번 1~6, 8~55번 각 계좌이체 행위(합계액 1,081,212,000원)에 관하여 피고는 B으로부터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 점에 관하여 살핀다.

① B과 피고는 부부로서 서로 부양의무(민법 제974조)가 있고, 생활비를 공동부담(민법 제833조)하는 관계에 있으며, 그 사이에 3명의 자녀가 있다. 이 부분 각 계좌이체 행위에 의하여 B이 피고에게 송금한 금액은 2016. 3.경부터 2018. 10.경까지는 매달 21,400,000원, 2018. 11.경부터 2020. 2.경까지는 매달 21,200,000원으로 비교적 정기적으로 일정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② 이와 같은 계속적, 반복적 또는 비정기적인 금전지급행위는 B과 피고가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생활비, 자녀를 위한 교육비 등 명목으로 지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나아가 B과 피고의 직업 및 소득수준, 자녀의 수, 생활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송금액이 부양의무의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금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③ 원고는 피고가 제출한 생활비 내역 중 일부 출금계좌가 피고의 사업용 계좌에 해당하거나 그 출금액 중 일부가 사업경비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B이 피고에게 계좌이체를 한 것은 증여에 해당할 뿐, 이를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B은 이 사건 각 계좌이체 행위 당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생활비를 사업용 계좌에서 이체하지 못할 이유가 없었고, 실제로도 두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자신의 용도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해당 이체금액이 실제 사업경비로 사용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가 제출한 생활비 내역 중 그 일부 내역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고 하여 이 부분 계좌이체 행위를 증여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④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B의 피고에 대한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이체 금액 합계 3,467,453,994원에 대하여 B이 피고에게 위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지 여부가 문제되었는데, 피고는 세무사를 통하여 위 금액 중 생활비 합계 973,673,756원(= 2014년 생활비 212,783,492원 + 2015년 생활비 200,536,185원 + 2016년 생활비 189,650,016원 + 2017년 생활비 154,310,600원 + 2018년 생활비 216,393,463원)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소명하였고, 실제 위 973,673,756원은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었다. 결국 이 사건 세무조사에서 생활비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소명이 받아들여져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 것이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공제된 위 생활비 명목의 이체 금액은 이 사건에서도 증여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원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는 민법상 증여와 구분되므로 증여세 과세 여부를 기준으로 사해행위를 판단할 수는 없고, 이 부분 계좌이체 행위는 B이 피고에게 재산을 무상 이전한 것으로서 민법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계좌이체 사실만으로 증여사실을 추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다음으로 별지1 순번 1, 4~8, 10~11, 13~15, 17~19, 21~23, 25, 27~29, 32~34, 36~40, 42~44, 46~48, 67, 69, 93~95, 109번 각 계좌이체 행위(합계액 540,606,220원)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계좌이체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는 B이 2012년경 다른 한의사들과 함께 추진하였던

프랜차이즈 사업이 무산되면서 반환해야 했던 자금 중 일부를 피고가 대신 납부한 것이거나 B이 C를 운영하면서 해외에서 구입한 재료비를 피고가 대신 납부하였다가 그 이후 B으로부터 위 비용을 반환받은 것일 뿐 B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피고는 세무사를 통하여 피고가 B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부분 합계 533,271,255원(= B의 프랜차이즈 반환금 대납액 295,478,200원 + B의 해외재료비 대납금 237,793,055원)에 대해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소명하였는데, 실제로 위 533,271,255원은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된 점, ② 원고는, 피고가 제출한 프랜차이즈 반환금 대납 내역에서 확인되는 대납 시점이 2014. 6. 10.부터 2014. 9. 20.까지인 반면 B이 피고에게 송금한 시점은 2016. 3. 10.부터 2016. 12. 10.까지이므로 위 송금액이 피고가 대납한 프랜차이즈 반환금에 대한 변제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B과 피고가 부부 관계에 있으므로 그 채무 변제기를 특별히 정하지 않은 이상 B이 2016년경에서야 피고의 대납금을 상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B의 대납금 변제 가능성을 배척하기 어렵고, 특히 피고는 2016. 8. 19. B을 대신하여 40,003,200원을 변제한 적도 있는 점, ③ 봉독은 B이 운영하였던 C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재료라고 볼 수 있고, 실제로 B이 홍콩의 지인을 통해 봉독을 구입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변소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부분 각 계좌이체 행위도 각 송금액이 증여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증명책임이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다음으로 별지2 순번 7번 500,003,200원 계좌이체 행위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이 부분 계좌이체 행위와 관련하여 B이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피고의 계좌로 그 대출금을 이체하였고, 피고는 위 대출금을 이용하여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송금액은 B의 증여액이라고 주장한다.

갑 제10, 12, 20 내지 25, 29, 30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B이 2016. 7. 19. E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대출금 5억 원 중 132,796원을 공제한 499,867,214원을 이체받은 사실, 2016. 7. 19. 피고의 소유인 서울 강남구 F 외 2필지 G건물 H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원, 채무자를 B, 근저당권자를 E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B이 2016. 7. 19. 피고의 D은행 계좌로 500,003,200원을 이체한 사실, 피고는 2016. 7. 25. 서울

강남구 I 외 1필지 J아파트 K호 중 1/2 지분을 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2016. 7. 27. 위 아파트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서울지방법국세청은 피고에 대한 부동산 자금출처 조사과정에서 위 J아파트 매수자금 중 5억 원의 자금원천이 E 대출금이라는 것을 확인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을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B은 E으로부터 대출받을 당시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던 점, ② B은 서울지방법국세청장에게 제출한 1, 2차 감치소명서에서 E에 대한 대출금 492,647,996원을 상환하였다고 소명하였고, 실제로 2018. 7. 19. 피고로부터 492,647,996원을 이체받은 적이 있는바, 피고의 주장대로 B이 피고로부터 돈을 이체받아 E에 대출금을 상환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③ B은 2004년 이후 한의원을 운영하지 않은 반면, 피고는 2001년 이후 계속해서 한의원을 운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류사업, 임대업 등도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부부 사이인 B과 피고 사이에 대출자 명의만 B으로 하되, 피고가 대출금을 사용하고 이를 상환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B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이 피고에게 이체되어 피고 명의의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부동산의 매수자금은 실질적으로 피고가 스스로 부담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계좌이체 행위는 증여로 인정하기 어렵다.

마) 다음으로 별지1 순번 50~51, 54~56, 73, 75~76, 83, 122~123, 125~127, 129, 136, 139, 142, 145번 각 계좌이체 행위(합계 266,605,900원)에 관하여 살핀다.

이 부분 계좌이체 행위에 대하여 피고는 B과 일상적인 금전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B에게 이체하였던 금액을 다시 반환받은 것일 뿐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가 2017. 4. 11.부터 2019. 11. 10.까지 B에게 이체한 금액은 총 228,040,000원(2020. 5. 28. 이체한 250,000,000원 제외)인 반면, B이 2017. 4. 11.부터 2019. 11. 10.까지 피고에게 이체한 금액은 229,862,220원으로 그 이체 시점이 거의 중복되고, 당시 B과 피고 사이에 이미 여러 차례 금전거래가 이루어진 바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부부 사이의 일상적인 금전거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비록 피고가 위 각 이체액의 구체적 세부명목을 주장하고 있지 않으나, 부부 사이의 예금 입금의 경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곧바로 B의 피고에

대한 증여라고 추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계좌이체 역시 증여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증명책임이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바) 마지막으로 별지1 순번 53, 57, 59, 61, 63, 65~66, 71, 77~78, 80, 82, 84, 86, 88~89, 91, 97~98, 100~101, 103~104, 106~107, 110, 112~114, 116~117, 119~120, 130, 132~134, 138, 143, 146, 148, 150번 각 계좌이체 행위(합계 826,000,000원)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계좌이체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다른 한의사들에게 약을 조제해준 후 그 대금을 B의 계좌로 입금받았고, B으로부터 이를 다시 반환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① 피고가 운영하는 L한의원에서 약을 조제하여 B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은 금액의 연도별 합계액은 2016년 128,7200,000원, 2017년 145,338,000원, 2018년 199,866,000원, 2019년 260,072,000원인데, 피고가 제출한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의 L한의원 원외탕전수입금액이 2016년 127,920,000원, 2017년 145,338,000원, 2018년 199,866,000원, 2019년 265,447,000원으로 그 금액이 거의 일치하는 점, ②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피고는 세무사를 통하여 피고의 매출분 중 B의 계좌로 이체된 부분 합계 525,524,000원(= 2014년 5,240,000원 + 2015년 46,360,000원 + 2016년 128,7200,000원 + 2017년 145,338,000원 + 2018년 199,866,000원)에 대해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소명하였고, 실제로 위 525,524,000원이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었으며, 위와 같이 소명하였던 금액 중 2016년 128,7200,000원, 2017년 145,338,000원, 2018년 199,866,000원의 경우 피고가 제출한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에 기재된 원외탕전수입금액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계좌이체 행위 역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B의 피고에 대한 증여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B의 이 사건 각 계좌이체 행위는 피고에 대한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지혜, 판사 정우채, 판사 남원석

[별지1]

목 록

번호	계좌번호	예금주	이체일자	이체금액(원)	수취인	수취은행	수취인계좌번호
1	<삭제처리>	<삭제처리>	2016/03/10	30,000,000	<삭제 처리>	<삭제처리>	<삭제처리>
2			2016/03/23	20,000,000			
3			2016/04/02	20,000,000			
4			2016/04/05	4,000,000			
5			2016/04/13	1,000,000			
6			2016/04/18	20,000,000			
7			2016/04/26	20,000,000			
8			2016/05/04	3,000,000			
9			2016/05/11	20,000,000			
10			2016/05/19	20,000,000			
11			2016/05/25	2,500,000			
12			2016/05/30	20,000,000			
13			2016/06/05	6,000,000			
14			2016/06/27	40,000,000			
15			2016/06/29	20,000,000			
16			2016/07/11	20,000,000			
17			2016/07/14	1,000,000			
18			2016/07/20	20,000,000			
19			2016/07/29	1,500,000			
20			2016/08/18	20,000,000			
21			2016/08/26	20,000,000			
22			2016/08/30	1,000,000			
23			2016/09/01	3,500,000			
24			2016/09/06	20,000,000			
25			2016/09/22	20,000,000			
26			2016/10/04	20,000,000			
27			2016/10/12	20,000,000			
28			2016/11/04	2,000,000			

29			2016/11/04	18,000,000			
30			2016/11/17	20,000,000			
31			2016/12/06	20,000,000			
32			2016/12/12	3,367,700			
33			2016/12/20	20,000,000			
34			2016/12/26	20,000,000			
35			2017/01/07	20,000,000			
36			2017/01/07	1,000,000			
37			2017/01/20	20,000,000			
38			2017/01/21	1,000,000			
39			2017/01/31	387,380			
40			2017/01/31	634,360			
41			2017/02/04	20,000,000			
42			2017/02/16	20,000,000			
43			2017/02/21	20,000,000			
44			2017/02/28	500,000			
45	<삭제처리>	<삭제처리>	2017/03/03	20,000,000	<삭제 처리>	<삭제처리>	<삭제처리>
46			2017/03/12	5,000,000			
47			2017/03/20	20,000,000			
48			2017/03/27	20,000,000			
49			2017/04/04	20,000,000			
50			2017/04/11	20,000,000			
51			2017/04/20	20,000,000			
52			2017/05/10	20,000,000			
53			2017/05/15	20,000,000			
54			2017/05/25	2,000,000			
55			2017/05/29	1,000,000			
56			2017/05/30	862,220			
57			2017/05/30	20,000,000			
58			2017/06/16	20,000,000			
59			2017/06/29	40,000,000			
60			2017/07/06	20,000,000			
61			2017/07/20	20,000,000			
62			2017/08/16	20,000,000			

63			2017/08/25	20,000,000			
64			2017/09/05	20,000,000			
65			2017/09/07	20,000,000			
66			2017/09/15	20,000,000			
67			2017/09/25	20,000,000			
68			2017/10/12	20,000,000			
69			2017/10/19	20,000,000			
70			2017/11/02	20,000,000			
71			2017/11/10	20,000,000			
72			2017/12/01	20,000,000			
73			2017/12/29	1,000,000			
74			2018/01/05	20,000,000			
75			2018/01/11	20,000,000			
76			2018/01/15	2,000,000			
77			2018/01/24	20,000,000			
78			2018/01/30	20,000,000			
79	<삭제처리>	<삭제처리>	2018/02/10	20,000,000	<삭제 처리>	<삭제처리>	<삭제처리>
80			2018/02/26	20,000,000			
81			2018/03/06	20,000,000			
82			2018/03/08	20,000,000			
83			2018/03/19	1,000,000			
84			2018/03/20	20,000,000			
85			2018/04/16	20,000,000			
86			2018/04/24	20,000,000			
87			2018/05/03	20,000,000			
88			2018/05/15	20,000,000			
89			2018/05/28	20,000,000			
90			2018/06/19	20,000,000			
91			2018/06/27	20,000,000			
92			2018/07/09	20,000,000			
93			2018/07/16	20,000,000			
94			2018/07/24	20,000,000			
95			2018/07/30	20,000,000			
96			2018/08/09	20,000,000			

97			2018/08/20	20,000,000		
98			2018/08/28	20,000,000		
99			2018/09/04	20,000,000		
100			2018/09/17	20,000,000		
101			2018/09/27	20,000,000		
102			2018/10/11	20,000,000		
103			2018/10/13	20,000,000		
104			2018/10/22	20,000,000		
105			2018/11/02	20,000,000		
106			2018/11/12	20,000,000		
107			2018/11/20	20,000,000		
108			2018/12/03	20,000,000		
109			2018/12/12	15,216,780		
110			2018/12/26	20,000,000		
111			2019/01/04	20,000,000		
112			2019/01/12	20,000,000		
113	<삭제처리>	<삭제처리>	2019/01/19	5,000,000	<삭제 처리>	<삭제처리>
114			2019/01/24	20,000,000		
115			2019/02/08	20,000,000		
116			2019/02/15	20,000,000		
117			2019/02/25	20,000,000		
118			2019/03/11	20,000,000		
119			2019/03/15	20,000,000		
120			2019/03/28	20,000,000		
121			2019/04/17	20,000,000		
122			2019/04/26	20,000,000		
123			2019/04/29	2,000,000		
124			2019/05/08	20,000,000		
125			2019/05/16	20,000,000		
126			2019/05/18	20,000,000		
127			2019/05/29	20,000,000		
128			2019/06/07	20,000,000		
129			2019/06/13	20,000,000		
130			2019/06/25	20,000,000		

131			2019/07/02	20,000,000			
132			2019/07/08	20,000,000			
133			2019/07/16	20,000,000			
134			2019/07/25	20,000,000			
135			2019/07/29	20,000,000			
136			2019/08/29	30,000,000			
137			2019/09/04	20,000,000			
138			2019/09/10	20,000,000			
139			2019/09/11	10,000,000			
140	<삭제처리>	<삭제처리>	2019/09/22	20,000,000	<삭제 처리>	<삭제처리>	<삭제처리>
141			2019/11/04	20,000,000			
142			2019/11/10	20,000,000			
143			2019/11/19	20,000,000			
144			2019/12/01	20,000,000			
145			2019/12/12	36,743,680			
146			2019/12/26	20,000,000			
147			2020/01/08	20,000,000			
148			2020/01/18	20,000,000			
149			2020/01/30	20,000,000			
150			2020/02/12	1,000,000			
	합 계			2,593,212,120			

[별지2]

목록

번호	계좌번호	예금주	이체일자	이체금액(원)	수취인	수취은행	수취인계좌번호
1	<삭제처리>	<삭제처리>	2016/03/07	1,400,300	<삭제처리>	<삭제처리>	<삭제처리>
2			2016/03/07	5,000,000			
3			2016/04/06	1,400,300			
4			2016/05/09	1,400,300			
5			2016/06/07	1,400,300			
6			2016/07/06	1,400,300			
7			2016/07/19	500,003,200			
8			2016/08/08	1,400,300			
9			2016/09/06	1,400,300			
10			2016/10/06	1,400,300			
11			2016/11/07	1,400,300			
12			2016/12/06	1,400,300			
13			2016/12/23	20,000,000			
14			2017/01/06	1,400,300			
15			2017/02/06	1,400,300			
16			2017/03/06	1,400,300			
17			2017/04/06	1,400,300			
18			2017/05/08	1,400,300			
19			2017/06/07	1,400,300			
20			2017/07/06	1,400,300			
21			2017/08/07	1,400,300			
22			2017/09/06	1,400,300			
23			2017/09/12	10,000,000			
24			2017/10/10	1,400,300			
25			2017/11/06	1,400,300			
26			2017/11/23	1,000,000			
27			2017/12/06	1,400,300			
28			2018/01/08	1,400,300			

29			2018/02/06	1,400,300			
30			2018/03/06	1,400,300			
31			2018/04/06	1,400,300			
32			2018/05/08	1,400,300			
33			2018/06/07	1,400,300			
34			2018/07/06	1,400,300			
35			2018/08/06	1,400,300			
36			2018/09/06	1,400,300			
37			2018/10/08	1,400,300			
38			2018/11/06	1,200,300			
39			2018/12/06	1,200,300			
40			2019/01/07	1,200,300			
41	<삭제처리>	<삭제 처리>	2019/02/07	1,200,300	<삭제 처리>	<삭제처리>	<삭제처리>
42			2019/03/06	1,200,300			
43			2019/04/08	1,200,300			
44			2019/05/07	1,200,300			
45			2019/06/07	1,200,300			
46			2019/07/08	1,200,000			
47			2019/08/06	1,200,000			
48			2019/09/06	1,200,000			
49			2019/10/07	1,200,000			
50			2019/11/04	20,000,000			
51			2019/11/06	1,200,000			
52			2019/12/06	1,200,000			
53			2020/01/06	1,200,000			
54			2020/02/06	1,200,000			
55			2020/03/06	1,200,000			
	합 계			621,215,200			

